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과 근무 제한 >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96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과 근무 제한	2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과 근무 제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직무적합도 검사의 실시 등)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이하 “직무적합도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적합도 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 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u>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적합도 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의 재실시,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0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u> 2. 3.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이 보육교사의 심리검사를 포함한 직무적합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한다면 보육교사가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현행법은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근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 여부

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근무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임용 후에는 근무 중 스트레스 등을 통해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 여부 및 치료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측면¹⁾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를 포함한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적합도 검사’ 신설과 관련하여, 직무적합도 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검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²⁾을 취득하고,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판결 중 발췌

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입법 목적(제1조), 보육의 개념(제2조제2호), 보육 이념(제3조제1항,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이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자격증 제도를 두는 한편(제20조, 제21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1조).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 2.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있으므로 새롭게 신설할 직무적합도 검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수행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둘째, 개정안 제19조의2제2항은 보육교사가 직무적합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직무적합도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면서, 개정안 제20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통해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관련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제16조 및 제20조³⁾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자격 및 근무제한 사유에 있어 심리검사 결과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항은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4)의 정신질환자(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대상 자격 등의 성격과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범위로 한정하여야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 9. (생략)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고,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근로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만으로 근로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기가 어렵고,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직권휴직 등 가능한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제도(각 교육청별 규칙)’가 운영 중이나 질병휴직 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바로 복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비교]

구분		유치원 교원 (기간제교원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대체·연장교사 등 포함)
양성과정		교직 적·인성검사 2회	-
임용단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정신질환 여부 포함)	채용 신체검사 (통상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준용)
재직중	진단	희망 교원 대상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활용	희망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상담·치료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소) 및 연계기관(상담기관, 심리치료기관 등을 통 한 상담·심리치료 지원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프 로그램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73개소) 상담 지원
고 위험군	근무 제한	질환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이 가 능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제도 가 있으나 활용 저조	‘정신질환자’의 근무 제한 단, 임용 후에는 정신질환자 해당 여 부 판단 곤란
	근무 복귀	질병휴직 후 의사진단서 제출 시 바 로 복직 가능	재채용시 신체검사서 제출 필요

* 자료: 교육부

5)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년 5월, p. 366-379 참고

- 참고로,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면직을 권고하는 내용과 관련한 입법례로는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등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참고자료1: 직무배제 등 관련 입법례 >

□ 셋째, 개정안 제19조의2제3항은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이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73개소)를 통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 참고자료2: 보육교직원 심리건강 검사(마음 UP) 개요 >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와 보육서비스 간 상관관계 및 검사 결과 검증의 한계로 인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적합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육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만으로 배제·해고하는 것은 현행 제도로 불가능하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원은 직위해제 시 재교육 조치를 하고 있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대구, 전북) 및 지방자치단체(부산, 전남)는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 판정 기준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및 유사 직군인 유치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를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 중인 보육교사에게 매년 직무적합도 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1

직무배제 등 관련 입법례

구 분	법적 근거	비고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제28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u>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u> 3. <u>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u>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u>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u> 2. <u>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u>	직무배제·전보·퇴직권고 가능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u>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u>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재교육명령 가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u>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u> ② <u>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u>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5.10.27. 기준)

참고 2

보육교직원 심리건강 검사(마음 UP) 개요

□ 개요

- (목적) 보육교직원 심리건강 검사 도구를 통해 심리건강에 대한 전문적 진단 및 적절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 취약 상황 예방 및 회복 지원
- (대상)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 (내용)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심리건강 검사 진행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운영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심리건강 검사 진행 (총 128문항, 약 20-30분 소요)	검사 결과 확인 및 해석 영상·결과지 제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기회복 및 힐링 프로그램 등)

※ 마음UP검사 홈페이지(www.kcpi.or.kr/mind4u)를 통해 검사 실시

□ 세부 내용

- (검사문항) 총 128문항(6개 대영역, 1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마음UP 검사 문항 구성 >

대영역(문항수)	하위영역(문항수)	대영역(문항수)	하위영역(문항수)
직무환경(46)	조직 풍토(7)	성격(19)	성실성(3)
	직무자율성(6)		친화성(3)
	직무 스트레스(20)		낙관성(3)
	이직의도(8)		편집성(3)
	직무소진(5)		회피성(3)
			공격성(4)
대영역(문항수)	하위영역(문항수)	대영역(문항수)	하위영역(문항수)
조직화(19)	주의집중 문제(4)	심리적 웰빙(16)	심리적 안녕감(3)
	실행 기능 곤란(15)		불안/우울(6)
			신체화(7)
대영역(문항수)	하위영역(문항수)	대영역(문항수)	
스트레스 대응전략(15)	인지적 유연성(6)	방어성(13)	
	대처능력(9)		

○ (마음 UP 검사 연계 서비스)

- 자기회복 프로그램(심리교육 영상 제공, 취약영역 강의 및 활동지 제공)
- 검사 해석 및 심리교육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상담 등 제공)
- 마음성장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 연계(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 자료: 교육부